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5. 11 선고 2021가단6572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상미, 최서준, 강주은, 김재홍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덕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1. 9.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0. 1. 접수 제871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6차전6125호로 ‘양수금 10,435,6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은 2016. 4. 7. 인용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D의 소유였다. D에게는 C을 포함한 3인의 아들이 있었는데(E이 장남, C이 차남, F가 3남임, 이하 ‘C 등’이라 한다), D이 2021. 4. 29. 사망한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21. 10. 1. 차남인 C 앞으로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2021. 9.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2021. 9. 30.자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하고, 이를 원인으로 마쳐진 2021. 10. 1.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 피고는 D의 장손이고(D의 3남인 F의 장남), C의 조카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 1)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택을 조카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 2)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1) D은 평소 자신이 사망하면 위 주택을 장손인 피고에게 증여하겠다고 하였고, D 사망 후 C 등은 D의 뜻에 따라 위 주택을 피고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2) 다만 D의 재산을 손자인 피고가 직접 상속할 수는 없어 C 등은 위 주택을 아들 중 1인이고 그 소유의 부동산이 없어 세금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C 앞으로 이전한 후 같은 날 증여의 형식으로 피고에게 이전해주었다. 피고는 C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원고를 해할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750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430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평소 이 사건 주택을 제사 등을 위해 장손인 피고에게 증여하겠다고 하였고, D 사망 후 C 등은 D의 뜻에 따르기 위해 위 주택을 피고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

2) C 등은 각 상속지분 1/3 지분을 등기한 후 각 지분을 다시 피고에게 증여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C을 제외한 E과 F에게는 부동산이 있었고, 이에 위 상속등기를 담당한 법무사는 재산이 없는 C 앞으로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경로하였다가 즉시 피고 앞으로 이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C 등과 피고는 이에 따라 같은 날 C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그 즉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

3)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미 만성알콜중독증 등으로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이었고, C이 채무자로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도 C 본인이 아닌 D(당시 81세)에게 송달되었다. C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고, 그렇다면 조카인 피고가 원고의 채권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C와 피고가 원고의 채권에 대해 알았다면 C은 상속포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추심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즉시 피고 앞으로 이전하였다. C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로되었던 것은 D 사망 후 장손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

별지

부동산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39.33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 112㎡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1200분의 1088

